

근로자 지원제도

3. 육아

육아휴직 및 급여

근로자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, 정부에서 임금의 40%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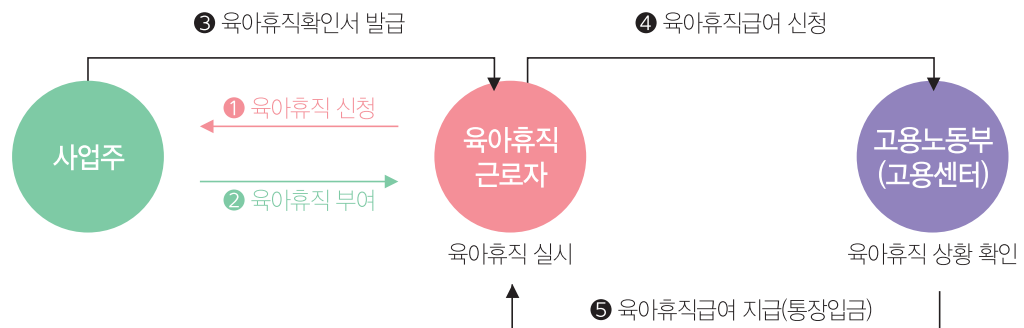
지원대상
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 자녀 포함)가 있는 남녀 근로자

지원내용

- 휴가 : 최대 1년(근속기간에 포함 /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)
- 급여 : 육아휴직급여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%(최대 150만원),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40%(최대 100만원)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.
※단, 육아휴직급여의 25%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 시 허용

지원방법



지원문의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국번없이 1350)
- 전국 고용센터(www.work.go.kr/jobcenter)